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. 11. 30 선고 2021가단3222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

담당변호사 양동혁, 이성현, 임선영, 홍승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원욱, 김민규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

담당변호사 김은정

변 론 종 결 2022. 10. 20.

판 결 선 고 2022. 11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21. 4. 11. 체결된

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. 8. 30. 접수 제386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
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차전358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(위 법원 2005차5028호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임), 위 법원은 2016. 11. 10. “C은 원고에게 2,88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. 10. 25.부터 2005. 8. 17.까지는 연 17%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, 2015. 10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”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6. 12. 16. 확정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지급명령’이라 한다).

나. D이 2021. 4. 11. 사망하였고,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C은 같은 날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,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 D이 2021. 4. 11.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,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

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,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(민법 제1008조),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(민법 제1008조의2 제1항),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른 재산분할결과는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.

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1억 3,000만 원이다.

② D의 처(C과 피고의 모)가 2007. 11. 26. 사망한 이래 피고가 전적으로 D의 생활비를 부담하며 부양하였다. D은 2013. 11.경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, 2020. 1.경에는 직장암 판정을 받기도

하였는데, 그 병원비, 치료비 등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다. 이러한 피고의 부양비용 지출은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것만을 산정하더라도 1억 230만 원에 이른다.

③ 반면에, C은 한번도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로 술을 마시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, 이에 D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도 전혀 없었다.

④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,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(민법 제1008조의2 제2항),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지를 고려하면, 피고와 C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실질적으로 100%로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(C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망 D을 부양한 동생인 피고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. 을 제3호증 참조), 결국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고 할 것이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고권홍

부 동 산 의 표 시

1.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호[도로명주소]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: 66.69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대 3079.3㎡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307930분의 4619

